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2022. 4

최수영·박희대

■ 연구 배경	4
■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변화	7
■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	12
■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 설문조사	16
■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 제언	28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무려 39.7%로 나타남.
 - 또한 안전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격조건 완화시 실무 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를 재도입하여 안전관리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이는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I 연구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안전보건 분야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관계 수급인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도급인 책임자
- 관리감독자(제16조) : 사업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자(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 건설사업 안전관리자는 사업 내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10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8호와 9호 기준은 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종 략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준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도 강화되었음.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준은 기존 공사 규모 120억원(토목 1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

-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 수급인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적용일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표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공사 규모	적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50억~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사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 	100억원 이상	2020년 7월 1일
	80억 이상~100억원 미만	2021년 7월 1일
	60억 이상~80억원 미만	2022년 7월 1일
	50억 이상~60억원 미만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최소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 사업 초기·말기에 투입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규모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등

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 방법	공사 기간 전후 15% 기간 안전관리자 수
50억~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1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겸직 및 공동관리 가능)	1명
120억(토목공사 150억원)~800억원	1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800억~1,500억원	2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1명 이상은 별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1명
1,500억~2,200억원	3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1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2명
2,200억~3,000억원	4명		
3,000억~3,900억원	5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2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3명 (1명 산업안전지도사 등)
3,900억~4,900억원	6명		
4,900억~6,000억원	7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2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4명 (2명 산업안전지도사 등)
6,000억~7,200억원	8명		
7,200억~8,500억원	9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3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5명 (3명 산업안전지도사 등)
8,500억원~1조원	10명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3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1/2(소수점 이하 올림), 3명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개정 전에는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명 이상 최소 포함되어야 할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800억~1,500억원 공사에서 1명 이상 최소 포함되어야 할 안전관리자 자격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대규모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이 강화됨.
- (공사 초·말기 투입 안전관리자 수 확대)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 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1,500억원 이상 공사부터는 공사 초·말기 투입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른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함.

2020년 7월 1일부터 점차 확대 중인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을 비롯해 최근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언론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표 3〉 참조). 공통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중소 업계의 안전관리자 수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음.

〈표 3〉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부족 관련 주요 기사

언론사	일시	기사 제목
한국경제	2022.01.21.	건설현장 5곳 중 4곳, 안전관리자 배치 못할 판
강원도민일보	2022.02.03.	도내 건설업 안전관리자 대거 이탈 “중대재해법 부담 가중”
아주경제	2022.02.09.	건설현장 안전 '빨간불'...수급 불균형에 안전관리자 '귀한 몸'
e대한경제	2021.08.17.	중소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어디 없나요”
아시아경제	2022.01.26.	대기업 몰려가는 안전관리자...중소는 한 명 뽑기도 빠듯
위키리크스한국	2022.01.26.	대형 건설사 안전 인력 쟁탈전 벌이는데...중소는 인력 없어 고전
충남일보	2022.02.09.	“예산 부족, 구인난에 자포자기”...중대재해법, 업종·규모별 양극화 우려
e대한경제	2022.01.04.	몸값 치솟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업계 전문인력 수급난 지속
e대한경제	2021.05.20.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무턱대고 확대하더니...안전관리자 수급대란 우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와 공급 현황을 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최근 안전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안전 분야 건설기술인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안전관리자 공급 및 수요 불균형 현황을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제5장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정책 제언을 제시함.

II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요 변화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이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2023년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됨.
 - 지난 2019년 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는 2020년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 8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까지 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임(〈표 1〉 참조).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사업 규모 50억~8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장 수는 2020년 기준 4,325개이며,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비율을 9.5%¹⁾로 가정한 경우의 예상치임.

〈표 4〉 2020년 건설사업 규모별 사업장 수

구분	50억~80억원			80억~100억원	100억원 이상
	소계	50억~60억원	60억~80억원		
사업장 수	4,325	1,873	2,452	1,551	9,468

자료 : 2020년 종합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 대한건설협회

- 오는 7월부터 공사비 60억원 이상,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에 의해 해당 규모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체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규정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비율은 2017년 근로복지공단 사업 가입 건설현장 자료를 참고함.

-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정의) 제1호~3호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만 포함되나, 추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²⁾
- 동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함.

■ 동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관련, 기업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에서도 기업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① (전 산업)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② (건설산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기업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 산출은 불가능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자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음.

-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안전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 체험학교를 개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이러한 투자는 추가적인 안전 전문가 확보를 동반하기에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3.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였으며, 정부가 2018년 수립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은 산재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발주자 책임 선도모델을 제시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신설됨.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는 산재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의 일환으로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및 이행 여부 점검,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활

2)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동 평가 및 기관장 책임성 강화, 산재 예방 관련 공공기관 평가 항목의 신설 등이 제시됨.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경우 안전업무 전담 조직의 설치 등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산재 위험이 높은 5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무 부처는 소관 기관의 안전 업무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 총원해야 함.
-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 중점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임.

❖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자문하는 전문가인 안전자문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를 명시하고 있기에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전문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발주자 의무에 해당하는 안전자문사 선임(선택적 의무)의 경우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명시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도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토관리원 전문인력을 133명 추가하고 현장점검 확대(2,600개→15,500개)를 계획하였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건설안전 점검인력을 199명(2021년)에서 308명(2022년)으로 확충하고 현장점검 대상도 1만 9,600개소에서 2만 2,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2020년 7,000 → 2021년 1만 개소)하였음.

4.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른 전문 지도기관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사업은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2019년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지도 대상사업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술지도 횟수도 강화됨.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공사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축소될 계획임.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는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남.
- 또한,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재해 기술지도 대상사업 확대와 기술지도 횟수 강화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혹은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최소 6명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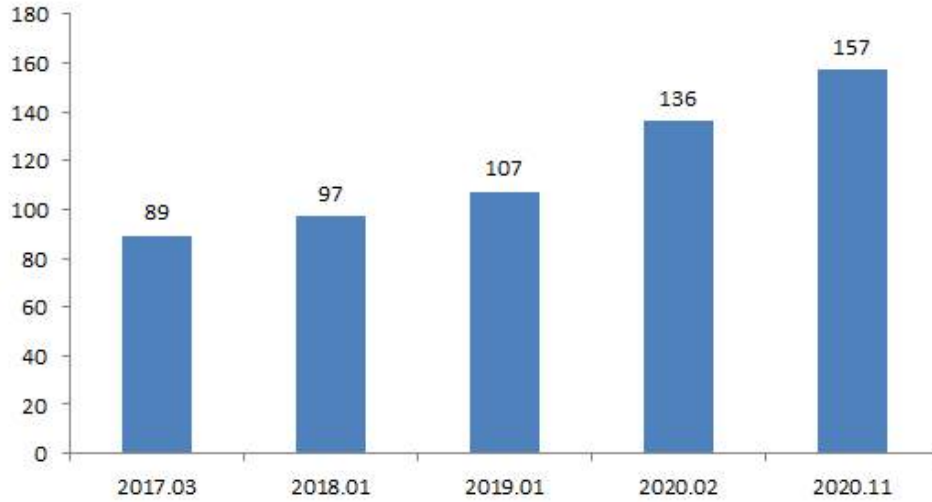
〈표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인력 기준

지도 인력 기준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2019년 1월 공포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1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향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1〉 연도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현황.

5. 소결

- ❖ 최근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변화는 건설공사 모든 참여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시공사 등 모든 주체가 확대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 이러한 현상은 비단 건설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타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건설 외 타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인력의 건설산업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 이러한 가운데 신규인력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Ⅲ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

1. 2021년 안전관리자 현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집계하는 건설기술인 통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함.

- 5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총계임. 가장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있으나,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어 업태 구분 등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능함.
-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 5개 경력관리 수탁기관 중 가장 많은 건설기술인이 등록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 기반한 수치로 업태 구분 등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함.
- 자격증에 따라 집계된 건설기술인 : 자격증 개수로 집계된 자료로 복수자격자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인 건설기술인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음. 참고로 2021년 자격증에 따라 집계된 건설기술인은 98만 2,134명으로 5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71만 968명과는 큰 차이가 있음.

■ 2021년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기준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은 3만 898명으로 전년(2만 8,516명) 대비 2,382명(8.4%) 증가하였음.

- 본 연구는 구체적인 통계 사용이 가능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를 심층 분석함.

■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의 업태별 분포 분석 결과, 일반건설업에 1만 1,738명(38.0%), 전문건설업에 4,525명(14.6%)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기술인 업태는 총 12개(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건설 관련 생산 및 제조업, 기타)로 구분됨.
- 12개 업태 중 건설기업(건설현장 + 본사)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은 일반건설업(1만 1,738명)과 전문건설업(4,525명) 합계인 1만 6,263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의 52.6%에 해당하는 수치임.
-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12개 업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로 1만 2,501명(40.5%)임. '기타'는 발주청, 건설 관련 단체, 비건설업체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으로 건설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볼 수 없음.

〈표 6〉 2021년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업태별 현황

(단위 : 명)

전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건축사사무소
30,898	11,738(38.0%)	4,525(14.6%)	226(0.7%)	62(0.2%)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사무소
	245(0.8%)	74(0.2%)	912(3.0%)	49(0.2%)
	안전진단 전문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건설 관련 생산 및 제조업	기타
334(1.1%)	113(0.4%)	119(0.4%)	12,501(40.5%)	

❑ 자격별로는 기사가 1만 9,864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여, 나머지 9가지 자격을 가진 기술인보다도 많은 수준임.

- 안전관리 분야 자격은 총 10개(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로 구분됨.
- 10가지 자격 중 기사가 1만 9,864명(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기사(7,806명, 25.3%), 학력경력자(1,726명, 5.6%), 기능사(805명, 2.6%) 순임.

〈표 7〉 2021년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자격별 현황

(단위 : 명)

전체	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30,898	602(1.9%)	-	19,864(64.3%)	61(0.2%)	7,806(25.3%)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805(2.6%)	11(0.0%)	11(0.0%)	1,726(5.6%)	12(0.0%)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1만 6,263명)으로 한정하여 자격을 살펴보면, 기사가 1만 714명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함.

- 10가지 자격 중 기사가 1만 714명(6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기사(4,169명, 25.6%), 학력경력자(627명, 3.9%), 기능사(463명, 2.8%) 순으로 나타나, 전체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의 자격별 현황과 큰 차이는 없음.

〈표 8〉 2021년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자격별 현황(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단위 : 명)

전체	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16,263	229(1.4%)	-	10,714(65.9%)	43(0.3%)	4,169(25.6%)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463(2.8%)	6(0.0%)	6(0.0%)	627(3.9%)	6(0.0%)

2. 최근 5년간 안전관리자 공급 추이

- 최근 5년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만 4,196명에서 2021년 3만 898명으로 6,702명 증가(27.7%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업 안전관리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동 기간 1만 2,757명에서 1만 6,263명으로 3,506명 증가(27.5% 증가)하였음.

〈표 9〉 최근 5년간 업태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증감률
합계	24,196	25,507	26,923	28,516	30,898	6,702	27.7%
일반건설업	9,165	9,741	10,077	10,717	11,738	2,573	28.1%
전문건설업	3,592	3,785	3,959	4,261	4,525	933	26.0%
주택건설업	152	170	186	211	226	74	48.7%
건축사사무소	42	45	46	55	62	20	47.6%
감리전문회사	158	177	186	191	245	87	55.1%
측량업	41	40	50	56	74	33	80.5%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716	750	774	830	912	96	27.4%
기술사사무소	36	42	45	43	49	13	36.1%
안전진단 전문기관	167	186	220	315	334	167	100.0%
품질검사 전문기관	84	85	93	98	113	29	34.5%
건설 관련 생산 및 제조업	102	104	110	108	119	17	16.7%
기타	9,941	10,382	11,177	11,631	12,501	2,560	25.8%

- 일반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동 기간에 9,165명에서 1만 1,738명으로 2,573명 증가하였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3,592명에서 4,525명으로 933명 증가하였음.
- 업태별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이 2017년(167명) 대비 2021년(334명)에

100.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측량업(80.5%), 감리전문회사(55.1%) 순임.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를 제외한 업체의 안전관리자 수는 절대적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증감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대부분 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서 평균 734명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무려 1,285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

- 전체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증가 수는 연평균 1,476명인데, 2021년 증가 폭(2,382명)은 2017년(676명)보다 무려 3.52배 높을 정도로, 최근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의 증가 폭이 큼을 알 수 있음.
- 그 외 안전관리기술자³⁾는 5년간 평균 152명 증가하였으며, '기타'도 평균 590명 증가하였음.

〈표 10〉 연도별 안전관리기술자 증가 수 변화 추이(2017~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합계	676	1,311	1,416	1,593	2,382	1,476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163	769	510	942	1,285	734
그외 안전관리기술자	124	101	111	197	227	152
기타	389	441	795	454	870	590

연도별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증가율은 평균 5.30%로 2021년이 8.58%로 가장 높았고, 2017년이 1.43%로 가장 낮았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연평균 안전관리자 증가율은 각각 5.34%, 5.2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 안전관리 건설기술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 연도별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증가율 변화 추이(2017~2021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1.43	6.03	3.77	6.71	8.58	5.30
일반건설업	1.09	6.28	3.45	6.35	9.53	5.34
전문건설업	2.25	5.37	4.60	7.63	6.20	5.21

3)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주택건설업·건축사사무소·감리전문회사·측량업·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기술사사무소·안전진단 전문기관·품질검사 전문기관·건설 관련 생산 및 제조업 안전관리기술자는 '그외 안전관리기술자'로 구분함.

IV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 설문조사

1. 설문 개요 및 응답 현황

본 연구는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 등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3건의 응답을 회수함.

- 설문조사는 올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약 2주간 이뤄졌으며, 응답 기업 중 중견기업은 21개사 (6.9%)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282개사, 93.1%).⁴⁾
- 응답 기업의 주업종은 토건 165개(55.4%), 건축 82개(27.5%), 토목 48개(16.1%) 순이며, 산업설비와 조경은 각각 1개, 2개사임.
- 본사 소재지에 따른 응답 기업 구분은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45개, 전남 38개, 경남 36개, 충남·세종 26개, 경북 23개 등임.

〈표 12〉 응답 기업의 기업 구분 및 주업종

기업 구분		주업종				
중소기업	중견기업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282개사 (93.1%)	21개사 (6.9%)	48개사 (16.1%)	82개사 (27.5%)	165개사 (55.4%)	1개사 (0.3%)	2개사 (0.7%)

주 : 주업종 통계의 경우 미응답 5건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표 13〉 응답 기업의 본사 소재지(시·도 기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45	61	14	8	8	2	-	10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17	26	-	38	23	36	10

회수된 303건의 자료 중 조사 항목별 미응답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03건 전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음.

- 미응답 항목으로 인해 분석에 활용된 문항별 표본 크기가 상이한 경우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수급과 관련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여건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규모별 분석 결과를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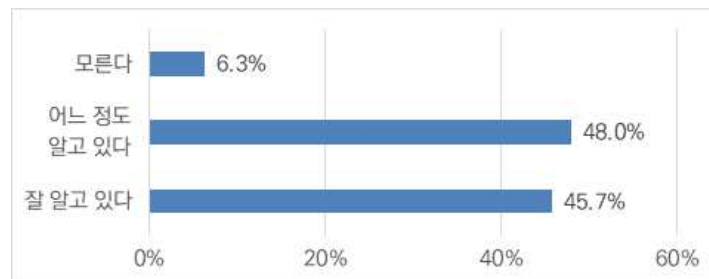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며,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매출액 300억원 초과 기업임.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 관련 인식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 기업의 45.7%가 '잘 알고 있다', 48.0%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3%(19건)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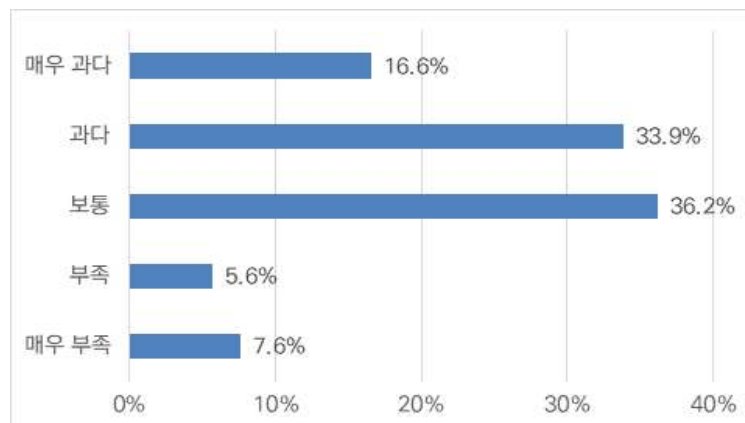
〈그림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에 대한 인식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함.

- 배치가 과다(및 매우 과다)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인 50.5%, 보통이라는 의견이 36.2%를 차지하였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과다(및 매우 과다)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중소기업의 51.4%, 중견기업의 38.0%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이어 배치 대상 공사 규모가 보통이라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 36.2%,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각 5.6%, 7.6%로 조사됨.

〈그림 3〉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규모에 대한 의견



3. 안전관리자 배치 및 활용 현황

(1) 안전관리자 배치 규모와 보유 자격

■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을 응답한 264개 기업들은 평균 2.89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0명, 중견기업 9.71명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 243개사가 배치한 안전관리자는 559명, 중견기업 21개사가 배치한 안전관리자는 204명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 중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기업은 응답 기업의 약 10.3%인 25개사이며, 배치한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규모는 대부분 5명 이하로 조사됨.
- 중견기업의 경우 모든 응답 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6명 이상 10명 이하로 배치한 기업은 3개, 11명 이상 배치한 기업은 6개로 조사됨.

〈표 14〉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 인원 현황

구분	소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수(명)	763	559	204
기업 수(개사)	264	243	21
기업당 평균 배치 규모(명)	2.89	2.30	9.71

〈표 15〉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 규모별 분포

구분	중소기업(243개사)				중견기업(21개사)			
	0명	1~5명	6~10명	11명 이상	0명	1~5명	6~10명	11명 이상
기업 수	25	201	15	2	-	12	3	6

■ 현장 안전관리자가 보유한 자격은 건설안전(산업)기사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안전(산업)기사는 30.5%를 차지함.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절반 수준이었음.

〈표 16〉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의 자격 사항

(단위 : 명)

구분	소계	자격 구분			
		기술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타
전체	658	11(1.7%)	201(30.5%)	399(60.6%)	48(7.3%)
중소기업	496	11(2.2%)	146(29.4%)	295(59.5%)	44(8.9%)
중견기업	162	-	55(34.0%)	104(64.2%)	4(2.5%)

주 : 1) 안전관리자의 자격별 구분을 답변한 211개사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자격사항 미기재 자료는 제외함.
2) 전체와 기타 통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를 동시에 보유한 인원의 값이 포함(중견기업)됨.

(2) 안전관리자의 근무 형태 및 계약기간 내 이·퇴직 현황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9.2%, 복수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3.4%로 조사됨. 배치 인원 기준으로는 각각 16.8%(겸직), 1.3%(복수 현장 배치)로 나타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응답 기업 수 기준으로는 타 업무를 겸직(29.2%, 28.6%)하거나 복수 현장에 배치(3.3%, 4.8%)한 기업의 비율이 대동소이하지만, 배치 인원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음.
-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배치 인원의 21.1%가 타 업무를 겸직하며, 1.6%가 복수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 중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배치 인원의 4.9%만이 겸직을, 0.04%가 복수 현장에 배치함.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건설사업 대부분이 법적으로 겸직과 복수사업 안전관리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중견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직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표 17〉 안전관리 외 타 업무의 겸직 또는 복수 현장 배치 인원

(단위 : 개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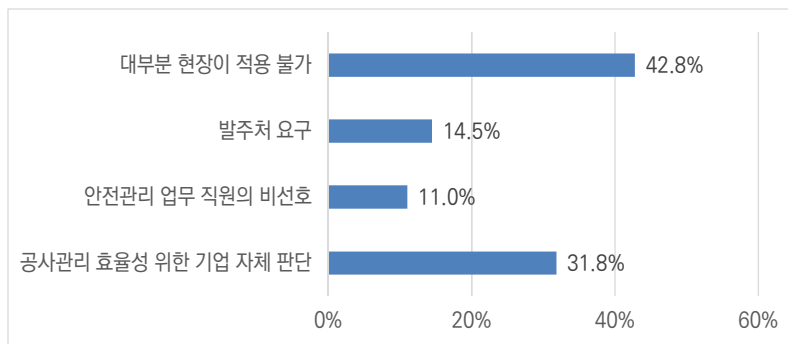
구분	안전관리 외 타 업무 겸직		복수 현장 안전관리 배치	
	기업 수	배치 인원	기업 수	배치 인원
전체	77(29.2%)	128(16.8%)	9(3.4%)	10(1.3%)
중소기업	71(29.2%)	118(21.1%)	8(3.3%)	9(1.6%)
중견기업	6(28.6%)	10(4.9%)	1(4.8%)	1(0.04%)

주 :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을 응답한 264개(중소기업 243개, 중견기업 21개) 기업의 응답 자료 분석 결과임.

한편, 조사 대상 기업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타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복수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유는 ‘공사관리 효율성을 위한 기업의 자체 판단’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31.8%).

- ‘대부분의 현장이 120억원 이상으로 법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42.8%)’를 제외하면 공사관리 효율성 때문이라는 의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발주처 요구(14.5%), 안전관리 업무 직원의 비선호(1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겸직·복수 현장 배치 미적용 사유



주 : 응답 표본 크기는 173개(중소기업 160개, 중견기업 13개)임.

다음으로,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무려 39.7%로 조사됨.

- 응답 기업 수 기준, 중소기업의 38.5%(213개사 중 82개사), 중견기업의 52.4%(21개사 중 11개사)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자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중 56.5%(207명 중 117명), 중견기업의 안전관리자 중 22.4%(152명 중 34명)가 계약기간 이내에 이·퇴직한 것으로 조사됨.

〈표 18〉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 안전관리자 이·퇴직 사례

(단위 : 명)

구분	응답 수 소계	이·퇴직 사례 존재			이·퇴직 사례 없음	
		응답 수	배치 인원	이·퇴직 인원	응답 수	배치 인원
전체	234	93(39.7%)	359	151(42.1%)	141	392
중소기업	213	82(38.5%)	207	117(56.5%)*	131	340
중견기업	21	11(52.4%)	152	34(22.4%)*	1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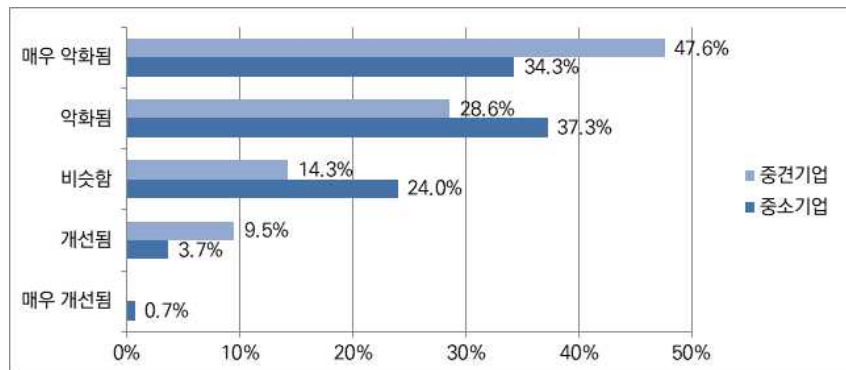
주 : 1) 안전관리자 배치 규모가 1명 이상이고 이·퇴직 여부를 답변한 234개사(중소기업 213개, 중견기업 21개) 응답 자료 분석 결과임.
2) 이·퇴직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배치 인원 대비 이·퇴직 인원의 비율임.

(3)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 변화

❑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악화 또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중소 71.6%, 중견 76.2%).

- 중소기업 응답 중 '매우 악화됨'(34.3%), '악화됨'(3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슷하다'는 응답은 24.0%, '개선 또는 매우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4.4%로 매우 낮았음.
- 중견기업의 경우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7.6%로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악화됨'(28.6%), '비슷함'(14.3%), '개선됨'(9.5%) 순으로 조사됨.

〈그림 5〉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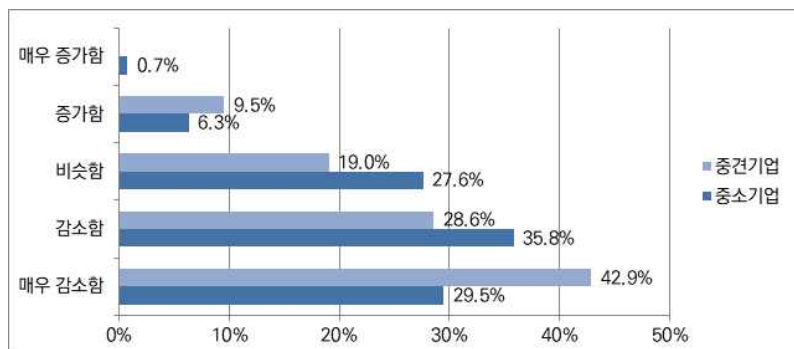


주 : 중소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71개, 중견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1개임.

❑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매우 감소 또는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중소기업의 65.3%, 중견기업의 71.4%를 차지했음.

- 취업 지원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은 중소기업의 7.1%, 중견기업의 9.5%에 불과했음.

〈그림 6〉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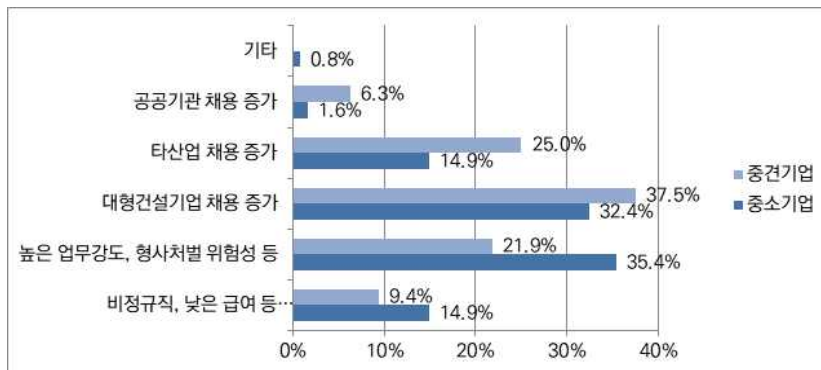


주 : 중소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68개, 중견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1개임.

이처럼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함.

- 중소기업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35.4%)’,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32.4%)’, ‘타 산업의 채용 증가(14.9%)’ 순으로 응답함.
- 중견기업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37.5%)’, ‘타 산업 채용 증가(25.0%)’,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21.9%)’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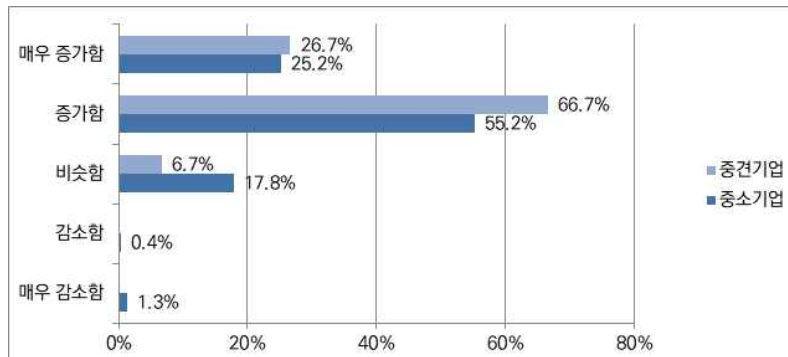
〈그림 7〉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감소의 원인



최근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증가(중소 55.2%, 중견 66.7%) 또는 매우 증가(중소 25.2%, 중견 26.7%)했다고 응답하였음.

-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취업(예정)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인해 건설기업이 지출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규모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8〉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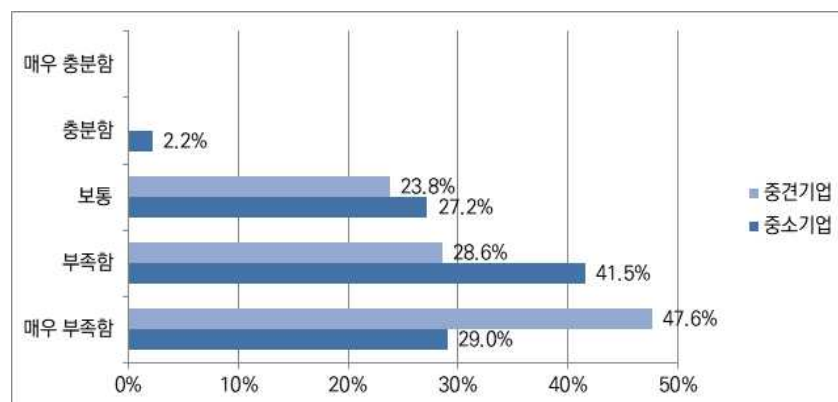


주 : 중소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30개, 중견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15개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부족 등 집행 여건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의 70.6%, 중견기업의 76.2%가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점도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향 요구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시사함.

- 응답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매우 부족'을 응답한 중견기업 비중이 중소기업을 훨씬 뛰어넘어 중견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9〉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 변화



주 : 중소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72개, 중견기업 응답 표본 크기는 21개임.

4. 안전관리자의 요구 역량 및 수급 안정화 방안

(1) 안전관리자 채용의 고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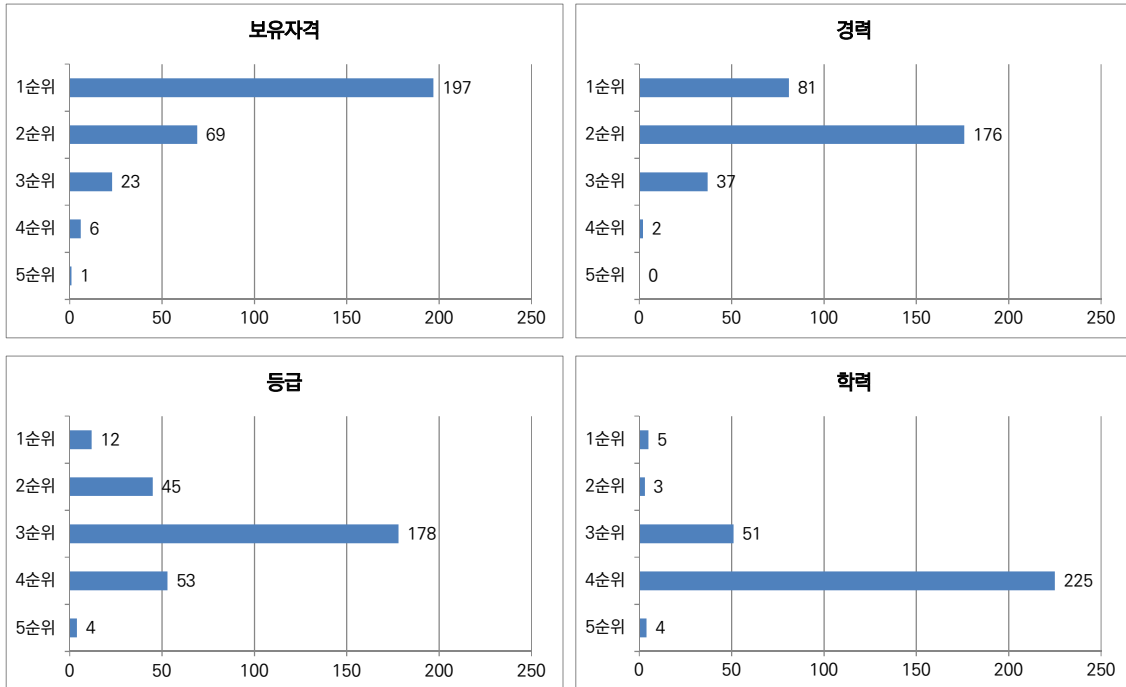
- 건설기업이 안전관리자 채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보유 자격 > 현장 실무경력 > 건설기술인 등급 > 학력 순으로 조사되었음.

-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한 빈도 수를 살펴보면 보유 자격을 1순위로 택한 응답이 197건, 현장 실무 경력에 대한 응답은 1순위 81건, 2순위 176건, 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응답은 3순위 178건, 학력을 택한 응답은 4순위 225건으로 조사됨.

- (보유 자격)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70% 이상은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관리자 보유 자격이 (건설/안전)산업기사라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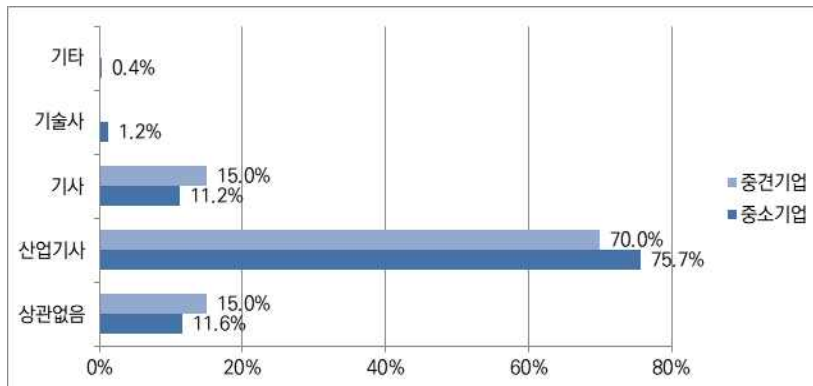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자격 기준이 산업기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그림 10〉 안전관리자 채용 우선순위



주 : 그래프 안의 숫자는 빈도값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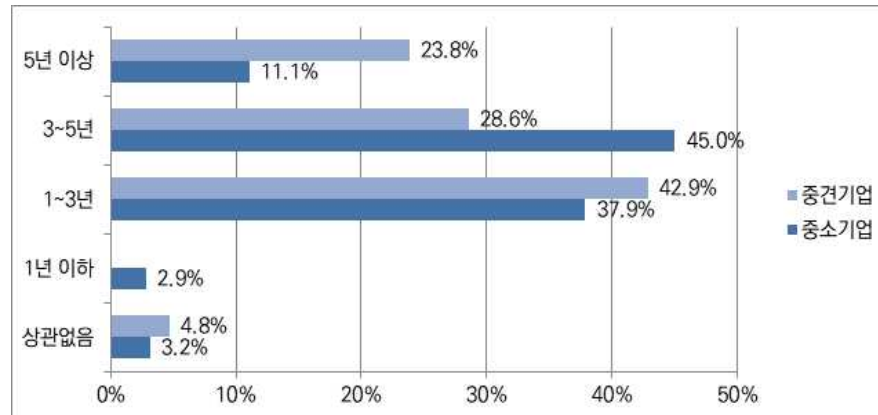
〈그림 11〉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보유 자격



■ (실무경력)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3~5년(45.0%), 그리고 중견기업은 1~3년(42.9%)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중소기업은 3~5년(45.0%), 1~3년(37.9%) 5년 이상(11.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견기업은 1~3년(42.9%), 3~5년(28.6%), 5년 이상(23.8%)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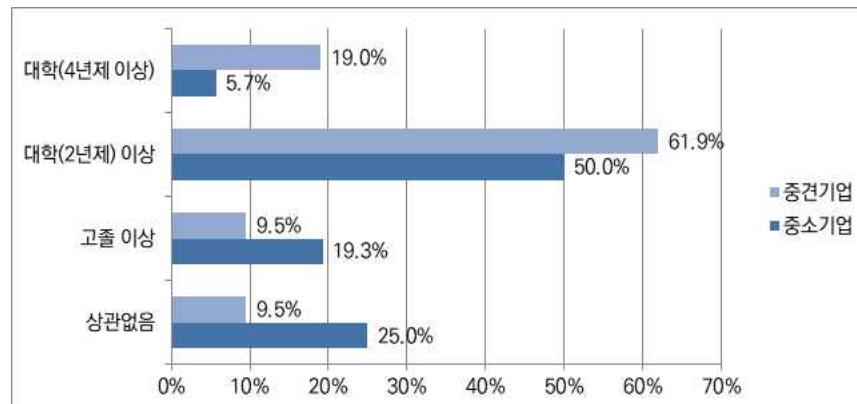
〈그림 12〉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경력



❖ (최종 학력) 안전관리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학력은 ‘대학(2년제)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중소기업 50.0%, 중견기업 61.9%), 이어 ‘상관 없음’, ‘고졸 이상’ 답변 비율이 크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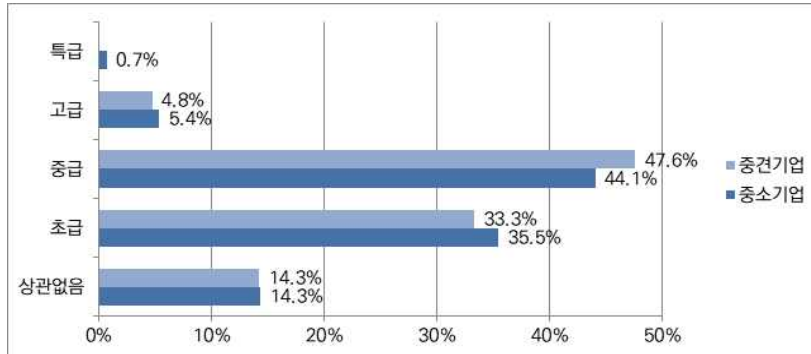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2년제 대학 이상(50.0%), 상관 없음(25.0%) 순으로 응답한 반면, 중견기업은 2년제 대학 이상(61.9%), 4년제 대학 이상(19.0%) 순으로 응답하여 중견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종 학력 기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종 학력



❖ (건설기술인 등급) 마지막으로,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해서는 ‘중급(중소기업 44.1%, 중견기업 4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초급’을 선택한 비율이 중소기업 35.5%, 중견기업 33.3%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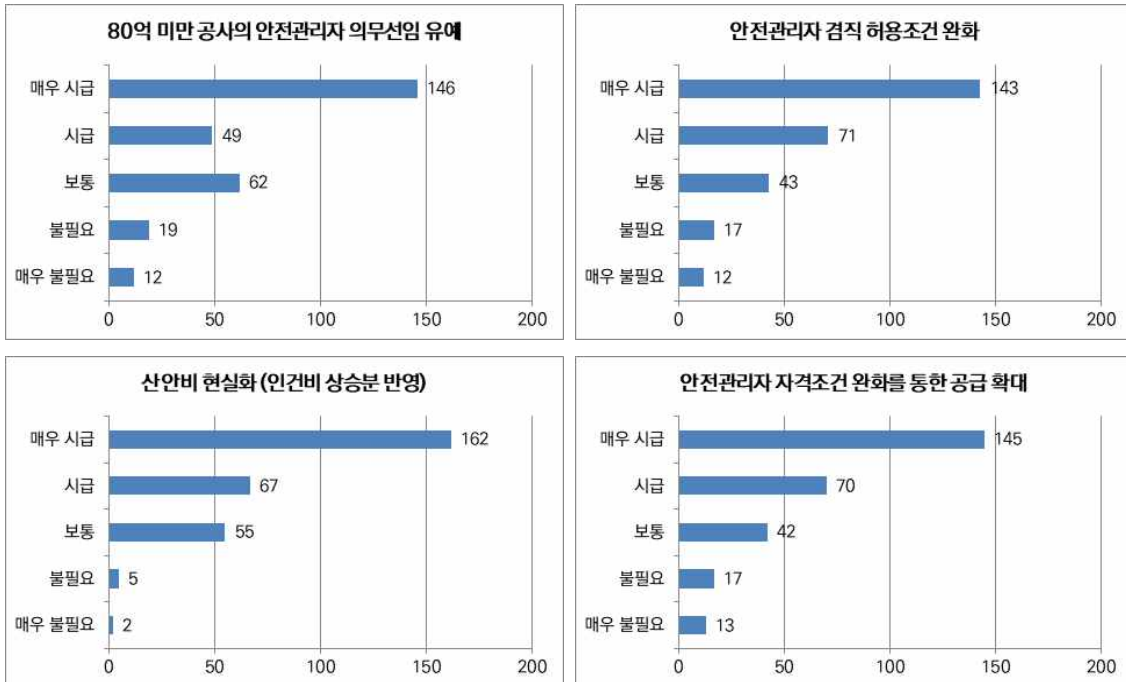
〈그림 14〉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건설기술인 등급



(2) 안전관리자 수급 안정화 방안⁵⁾

- 안전관리자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답 항목 4개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림 15〉 안전관리자 수급 안정화 방안



주 : 그래프 안의 숫자는 빈도값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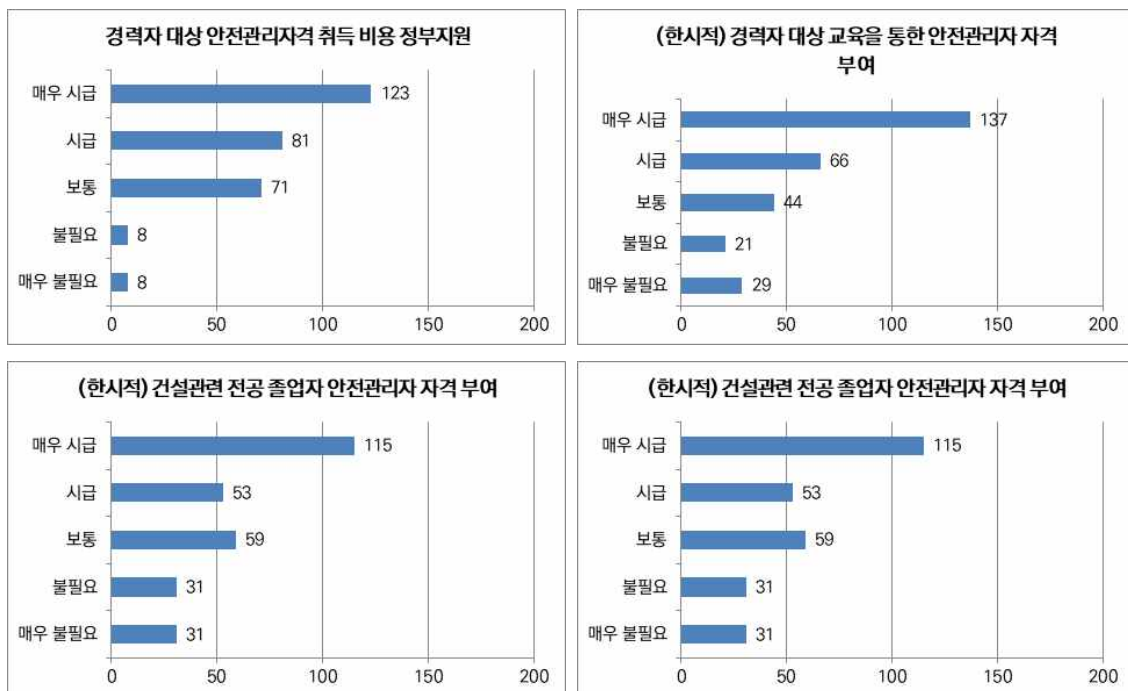
5)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 확대 방안은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 및 중견 건설기업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으로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 검증을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매우 시급' 또는 '시급'을 선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매우 시급'으로 선택한 빈도가 162건으로 조금 더 높았음.

■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경력자 대상 안전관리 자격취득 비용의 정부 지원', '한시적으로 경력자 대상 교육(1개월 이내)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경력자 대상 교육(1개월 이내)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와 '경력자 대상 안전관리 자격취득 비용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반면, 중견기업은 '경력자 안전관리 자격취득 비용 정부 지원'에 이어 '대학의 안전관리 관련 학과 증설'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음.
- 종합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기존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6〉 안전관리자 공급 확대 방안



주 : 그래프 안의 숫자는 빈도값을 의미함.

V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 제언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

■ (안전관리자 수요) 최근 다양한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매우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약 3,914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구간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대부분 중소 건설기업에서 발생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기업에게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 전 산업에 적용되기에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에서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함. 최근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안전자문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발주자의 안전관리 전문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큼. 또한,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도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른 전문 지도기관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건설재해 기술지도 대상사업 확대(3억 이상→1억원 이상)와 기술지도 횟수 강화(월 1회→월 2회)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짐. 고용노동부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89개였던 지도기관이 2020년 11월에는 157개로 급증하였음.

■ (안전관리자 공급)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건설기업(일반+전문 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정도임. 최근 건설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734명은 건설기업(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에 공급되고 있음.
- 건설산업에 추가로 공급되는 1,476명이 모두 일반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까지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의해 예상되는 안전관리자 인력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를 도입(2020년)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는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4개월의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1곳밖에 없는 등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책으로 부족으로 상황임.

■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가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하였다는 의견도 많았으며(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가 지목됨.
- 최근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소기업 80.4%, 중견기업 93.4%),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2. 예상 문제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 가중

■ 중소 건설기업의 건설 기술인력 수급 문제는 예전부터 대두되었지만, 최근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2019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⁶⁾에 따르면, 중소 건설기업의 74.5%(51개 중 38개 기업)가 건설기술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기술자와 안전관리자 수급이 가장 힘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는 최근 건설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기 이전부터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은 원활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중소 건설기업이 무려 71.6%에 달하였으며,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 건설기업도 38.5%로 나타나 최근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요구(연봉 등) 수준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는 대부분 중소 건설기업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 건설기업은 예전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필요할 것임.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사 안전관리 조직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이 최근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0.4%에 달하였음.

(2)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족

■ 건설산업에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상승할 것임. 안전관리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행 안전관리비용 체계에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비용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큼.

■ 건설사업의 안전관리자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요율화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8가지 항목 :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②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안전시설비 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⑦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총 사용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집행은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및 불가 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집행하고 발주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음.

- 이는 안전관리자 비용이 증가하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사용금액은 증가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8가지 사용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나머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중소 건설기업이 70.6%로 조사되었음.

3. 정책 제언

❖ 최근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 볼 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임.

- 이미 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몸값이 금값'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큼.
-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서 건설·건축 분야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무려 2,360건(2022년 3월 10일 기준)으로 69개 직무·직업별 채용공고 중 가장 높은 비중(13.0%)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자(578건)를 포함할 경우 채용공고 비중은 건설·건축 분야 채용공고의 16.2%에 해당할 정도임.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로 공급된 안전관리자 수가 연평균 1,476명(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734명)임을 감안하면, 최근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는 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있는 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소 건설기업과 같은 특정 그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 건설업에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할 경우,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

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설기술인의 취업 선호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높을 것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업무 환경이 좋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
-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71.6%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였음. 또한 이러한 수급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가 지목되었음.

이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와 같은 건설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제도 시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는 50억~80억원 구간의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결국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정부에서 기대하는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관리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하여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를 도입(2020년)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제도'는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4개월의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1곳밖에 없는 등 건설업 안전관리지 공급책으로 부족으로 상황임.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의 재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이 필요함.

-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는 다음의 <표 19>에 나타난 것처럼 과거에도 운영된 바가 있음.

〈표 19〉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실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자 자격 부여 제도

대상	제도 운영 기간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하고 1년 이상 경력자	1990.7.14~1998.12.31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하고 3년 이상 경력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이상 경력자	1993.11.20~1998.12.31

■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는 안전관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전문가임. 이에 무분별한 안전관리자의 양적 확대는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설문 결과,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완화시 현장 실무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서의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함.

■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희망자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산업 내 인지도가 높은 건설 관련 교육기관에서 자격 인정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안보)이 직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울산)을 포함, 24개 기관에서 직무교육 대행을 하고 있음.
- 공사 발주가 많아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교육 이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 등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격 인정 교육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불일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경력과 등급 등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니즈에 맞는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총 사용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증가는 결국 사용 가능한 나머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중소 건설기업이 70.6%로 조사되었음.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중소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소진하게 될 것임.

- 이는 결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문제는 결국 중소 건설기업의 비용 부담과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표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례

공종	공사명	공사 기간(년)	기초금액(천원)	산인비(천원)	안전관리자 급여(천원)
토목	국도 30호선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1.97	5,556,210	93,229	87,275
건축	교통대학교 체육관 증개축공사	2.05	5,694,051	91,061	90,819

주 : 안전관리자 급여는 건설업 생산종업원 상용직 기술인 급여액을 활용함(통계청, '건설업 조사 통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당 사업 규모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에서의 접근 필요

-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유지하면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는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조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검증이 필요하기에,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요율 조정이 필요할 것임.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